##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

# 코로나19 관련 「예술강사 시수 소화방안」 시행 안내 및 협조요청

'20. 7. 21. / 교육진흥원 청소년교육본부

## □ 추진개요

ㅇ **건　　명** : 코로나19 4차 대응 예술강사 시수 소화 방안

ㅇ **추진목적** :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배치 잔여시수를 활용, 예술강사 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 시수 손실 방지 및 예술강사 수입 보전

ㅇ **소화방안**

- 예술강사 출강 인정 범위를 강의 외 학교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으로 확장
- 콘텐츠 제작·활용 유형의 확대 운영
- 예술강사 출강기간 연장( '20년 12월까지 ⇒ '21년 1월까지/1개월 연장) 등

ㅇ **추진절차**

| 교육진흥원 → 운영기관 | | 운영기관 →예술강사 | | 예술강사-학교 간 협의 | | 예술강사 | | 예술강사 →운영기관·학교 | | 운영기관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①계획 수립 및 안내 | ➡ | ②계획 시행 안내 | ➡ | ③관련 활동 및 잔여 시수 획정 | ➡ | ④콘텐츠 제작 등 | ➡ | ⑤출강활동 등록, 콘텐츠 및 저작물 활용 동의서 제출 | ➡ | ⑥ 강사비 지급 등 행정처리 |

## □ 세부 추진방안

### 1) 예술강사 출강 인정 범위 유연화

ㅇ **지원교과 외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출강 행위로 폭넓게 인정**

- 캠프, 축제, 자유학기제 수업, 방과 후 교실, 연구활동 등 학교와 강사 간 협의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활동의 출강 시수 인정

**※ 강사와 학교 간 합의 있다면 최대한 유연하게 인정**

- 출강 결과 등록 및 교통비 산정 등 운영 방식은 등교수업과 유사하게 운영
  · 강사비는 1시간 활동 당 1시수 인정, 시수 당 43,000원 강사비 지급
  · 근무장소는 출강학교로 제한되며, 교통비는 대면수업과 동일기준 지급
  · 예술강사 근태관리 시행, 학생만족도 조사 미시행

ㅇ **교육일정과 무관히 강사에게 다양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제작 요청 가능**

- 학교가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마련 기타 목적으로 교육일정과 무관하게

필요한 콘텐츠의 제작을 예술강사에게 의뢰

- 출강 결과 등록 기타 운영 방식은 ‘콘텐츠 제공·활용’ 유형과 동일

· 1차시분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분량의 콘텐츠 1개당 4시수의 강사비 지급

· 근무장소의 제약 없으며, 별도 교통비 지급 없음

· 콘텐츠 제출일을 출강일로 등록 기재, 1일 최대 8시수까지 인정가능

· 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작성 필요

**[참고] 예술강사 출강 인정 범위 유연화 추진 경과**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내용</th></tr>
<tr><td>1차 유연화 조치<br>(3.27.)</td><td>o 지원 수혜학급 확대 및 교육과정의 한시적 유연 적용<br>- (유형1) 학교 별 수혜학급 수 확대를 통한 지원시수 소화<br>- (유형2) 학교 별 계획된 예술강사 지원 교육과정의 확대<br>- 적용예시 : 200시수 선정학교 기준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당초</th><th>조정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(유형1) 수혜학급 확대</td><td>2개 학년, 총 10개 학급<br>×20시수=200시수</td><td>4개 학년, 총 20개 학급<br>×10시수=200시수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등교수업에 맞춰 예술강사 출강 기간을 줄이되 대상 학급을 확대</td></tr>
<tr><td>(유형2) 교육과정 확대</td><td>기본교과 200시수</td><td>기본교과 150시수<br>+창의적체험활동 50시수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2차 유연화 조치<br>(4.10.)</td><td>o 방학기간 중 예술강사 출강 활동 허용<br>- 개별 학교의 수요에 대한 예술강사 수용 시 추진 가능<br>o 예술강사의 주 15시수 이내 활동 제한 관련<br>- 매주 15시수가 아닌 매월 60시수로 한시적 유연 적용<br>- 연속 월이 아닌 특정 월에 60시수의 경미한 초과는 제한적으로 가능<br>※상기 사항은 전체 학교 출강시수의 합을 기준으로 함</td></tr>
<tr><td>3차 유연화 조치<br>(7.21.)</td><td>o 지원교과 외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(캠프, 등) 허용<br>o 콘텐츠 제작 유형 활용 다변화<br>- 학교 희망에 따라 교육일정과 무관히 콘텐츠 제작 요청 가능</td></tr>
</table>

※ 코로나 19에 따른 예술강사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

☞ 유연화 조치와 연계하여 가급적 연간 배치시수를 온전히 소화

## 2) 콘텐츠 제공·활용 유형 확대 운영

o 예술강사의 배치시수 중 잔여시수를 파악하여, 해당 시수 상당의 콘텐츠를 운영기관에 공급함으로써 수업시수 소화

**o 세부 추진절차**

**① 예술강사-학교 협의를 통하여 예상 잔여시수 파악**(예술강사, 학교)

- 학교-강사 간 협의를 통해 배치시수 중 연중 출강(대면, 원격 등) 가능한 시수를 파악
- 소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시수를 제도 시행 대상 시수로 확정

※ 예) A강사의 하반기 계획시수(80시수)에 대해 학교와 협의 후 교육시수(50시수), 잔여 예상시수(30시수) 규모 결정 ☞ 제도 시행 대상 시수(30시수) 확정

- **학교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 대상 시수 확정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(7월 중)에 잔여시수 파악 필요**

※ 잔여시수 파악 대상 기간은 분기(7~9월) 또는 반기(7~12) 등으로 자율 설정 가능

**② 예술강사 별 콘텐츠 제작 계획 운영기관 제출**(예술강사→운영기관)

- 총 계획시수 중 학교와 협의된 교육시수와, 제도 시행 대상 시수 규모 운영기관에 고지 필요
- 출강일정 및 월 시수제한 등 고려하여 콘텐츠 제작 및 제공 계획 운영기관에 제출 (월별출강계획 제출 시 포함)

※ 소속 학교 정보 포함하여 제출

**③ 예술강사 콘텐츠 제작·제출**(예술강사→운영기관·학교)

- 8개 장르를 기반으로 원격수업 1차시에 활용 가능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역운영기관 및 학교에 제출

※ 배치 학교의 경우 해당 콘텐츠 이용 자격 부여(단, 이용 희망 학교의 경우 저작권 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 작성 필요)

※ 콘텐츠의 종류는 영상으로 한정하지 아니하며, 분야별 특성 등 고려하여 1차시분에 해당하는 다양한 형태(시청각 자료 전반)의 교육자료 제작 및 제출 가능

※ 지역운영기관 저작물 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 양식은 추후 별도 배포 예정

- 제출된 콘텐츠는 지역운영기관이 검수 및 목록화(제작 계획서 취합)하여 관리

**④ 콘텐츠 제공에 따른 강사비 지급 등 행정처리**(운영기관)

- 지역운영기관이 월별 제출실적 취합하여 강사비 지급
- 콘텐츠 1차시분 제공 당 4시수 분 강사비 지급 처리(기 운영 기준과 동일)
- 콘텐츠 제공시수와 교육시수 합산하여 **'등록월 기준 월 시수제한'**

## 3) 교육기간 연장(~ ' 21.1.31) 시행

○ 사업 시행기간 연장(~ '21.1.31.) 및 예술강사 출강기간 동반 연장 추진

- 잔여 배치시수가 있는 예술강사-학교 간 상호 희망하는 경우, 예술강사의 출강기간(근로계약기간)을 익년 1월까지로 한시적 연장 가능